

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로드킬 동물사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거·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대상에 다자녀 출생(입양) 신고자를 신설하여 출산·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4)
-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대상 신설(안 제17조제1항제4호)
-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규격 세분화 및 품명 신설(안 별표 1)

(현행) 76종 → (개정) 91종 : 2종 규격 세분화, 15종 품목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로드킬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,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출생(입양)신고자에게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을 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